

제주지방법원 2015. 11. 13 선고 2015가단5346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제주시 C 대 113.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가' 부분 지상 벽돌조 스텔치지붕 단층 주택 36.3㎡를 철거하고,

나.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제주시 C 대 113.4㎡의 소유자이다.

피고는 아무런 권한이나 권리 없이 제주시 C 대 113.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가' 부분 지상 벽돌조 스테트지붕 단층 주택 36.3㎡를 축조하였다.

위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 인도 청구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영호

별지